

# 蒙·元の 征服戰爭과 高麗 女性

## 裴淑姬 (濟州大)

- I. 머리말 IV. 駐屯軍의 歸還과 高麗女性  
II. 蒙·元の 高麗征服과 通婚의 背景 V. 맺는말  
III. 宋元軍官과 高麗女性의 通婚

### I. 머리말

고려왕조는 중국의 五代·兩宋에서 明 초기까지 약 500년 동안 유지된 왕조로 이 시기 고려와 중국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중국 북방에서 흥기한 遼·金·元 세 왕조가 고려와 중국에 압박을 가해왔다. 대몽항쟁에서 실패한 고려는 원나라에 복속을 당하는 특수한 정치적 관계에 놓였으며, 고려인들은 자의 또는 타의로 중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고,<sup>1)</sup>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중국으로 갔던 여

1) 원대 고려인은 人質·朝觀·婚姻·科擧 入仕(元 制科及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성과로는 張東翼, 「元에 진출한 高麗人」(『민족문화논총』 제11집, 1990); 王崇實, 「元與高麗統治集團的聯婚」(『吉林師範學院學報』, 1992-4); 김위현,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경인문화사, 2004) 등이 있다. 특히 勞延燠는 원나라 초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중국으로 팔려간 고려여성들은 태반이 비녀였는데, 이들이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갑자기 達官 貴人 사회의 상징으로 변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勞延燠, 「論元代高麗奴隸與媵妾」 『慶祝李濟先生七十歲論文集』台北, 1967).

성들을 보통 '貢女'라고 칭한다.<sup>2)</sup> 공녀로 갔던 고려 여성들 중에서 몇 사람은 비교적 유명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奇皇后이다(順帝의 두 번째 황후).<sup>3)</sup> 고려 공녀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하여 국내외와 중국에서 여러 연구가 있다.<sup>4)</sup>

그러나 고려의 보통 민간 여성, 특히 13세기 몽고 침략과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되면서 고려 여성들이 南宋의 투항 군인이나 원의 군관간에 이루어진 통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貢女를 다루는 일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그 通婚이 원나라의 南宋 정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후 원나라가 꿈꾸는 정복사업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미처 주목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원나라로 가게 된 고려 여성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접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어 초보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다.<sup>5)</sup> 원에서 고려에 童女를 요구한 것은 대체로 元 世祖 至元 12년(1275)부터 順帝 至正 23년(1369)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남송의 투항 군인과 고려 여성간의 통혼과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의 歸還은 원 세조 지원 10년(1273)부터 원나라가 제1·제2차 일본원정을 하는 전후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 원나라가 新附軍을 안무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군인과 고려 여성간의 통혼은 송 태종이 北漢을 멸하고 그 부녀자들을

2)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貢女의 범주를 宋元 軍官과 결혼한 여성으로만 한정시키겠다.

3) 權衡, 『庚申外史』 권상, “徽政院使臣宦者高麗人朵滿送兒者薦高麗女子祁(奇)氏于帝”; 이용범, 「奇皇后와 冊立과 元代의 資政院」(『歷史學報』 17.18, 1962).

4) 柳洪烈, 「고려의 元에 대한 貢女」(『震檀學報』 18, 1957); 정구선, 『중세시대의 환관과 공녀』(국학자료원, 2004); 김위현, 「여원간의 인적교류고」(『관동사학』 5.6합집, 1994); 喜蕾, 『元代高麗貢女制度研究』(民族出版社, 2000); 喜蕾, 「元代高麗貢女與蒙古族以外的其他民族通婚狀況考述」(『西北民族研究』, 2002-3); 馬娟, 「元代色目高麗通婚舉例」(『寧夏社會科學』, 2002-5).

5) 처음으로 고려 민간 여성과 몽고인과의 결혼에 주목한 사람은 李能和이다(『朝鮮女俗考』 권23, (六) “高麗民女與蒙古人婚姻”條(東洋書院, 1927); 裴淑姬, 「論元時期高麗女子和異民族軍人間的婚姻」(『中國西南大學民族史研討會』 발표, 2005.10).

탈취하여 군대를 따르게 했던 ‘營妓’<sup>6)</sup>와도 차이가 있다.

결혼을 통해서 고려여성들이 원나라로 가게 되는 과정이나 원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확보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sup>7)</sup>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동란 속에서 겪어야 하는 여성의 삶을 밝힘과 동시에 13세기 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일익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원나라로 갔던 고려 민간 여성들의 혼인의 실체를 최대한 밝혀 나름대로 유형화 하고, 양국 간의 통혼을 13세기 몽고의 정복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고려여성들이 이국 땅에서 고려의 민족 문화와 풍속을 보존했던 측면도 아울러 다루어 보고자 한다.

## II. 蒙·元の 高麗征服과 通婚의 背景

고려 여성들은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원나라로 유입되어 왔는데 원 세조때 강화가 성립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크게 양분된다. 양국 간에 강화가 맺어지기 전에는 주로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는 군인의 처, 관료의 처첩, 동녀, 궁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원나라로 갔다. 고려 고종5년(몽고 태조 13년, 1218년)에 몽고는 거란족의 토벌을 명분으로 고려 영내를 침입한 이후, 원나라는 고려에 대해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양의 정기적인 공물의 정수를 요구하였다. 양국의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던 중 고종 12년(1225)에 몽고

6) 鄧之誠, 『骨董鎖記』 “宋官妓營妓” (北京: 三聯書店, 1995). 營妓라는 글자의 의미는 史籍에서는 “樂營妓人”에서 유래하였으므로 ‘營’은 軍營을 가르킨다고 생각하여 대체로 營妓를 軍妓라고 간주하여 왔다. 최근에 常建華는 營妓는 軍妓가 아니라 보통 지방의 官妓라고 주장하였다(常建華, 『論宋代『營妓』』, 『史林雜識』, 1997).

7) 陽渭生等 編著,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下冊)』 (學苑出版社, 2002). 『高麗史』 「世家」 高麗與蒙古(元朝).

사신 著古與의 피살을 계기로 본격적인 침략을 행하였다.<sup>8)</sup> 고종 44년(1257) 柳璣 등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 들이 무인집권자 崔毅를 죽이고 몽고와 강화를 시도하였다. 고종 46년(1259)에 몽고 군대가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태자 王侁을 인질로 데리고 갔다. 이후 고종이 서거하자 쿠빌라이는 왕전을 후하게 대접하고 본국으로 호송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가 바로 元宗이다. 왕전은 처음으로 원나라에 갔던 태자였고 이후 7명의 세자가 원나라에 인질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이 중에서 25대 충렬왕에서부터 31대 공민왕까지 원나라 공주와 懿妃 소생으로 왕위에 오른 자는 26대 충선왕·27대 충숙왕·29대 충목왕까지 3명의 왕이 있다.

몽고와 고려의 군사상의 충돌이 빈번해짐에 따라 많은 고려 군민들이 몽고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몽고군이 “10세 이상의 남자는 도륙하고 그 부녀와 어린아이는 사로잡아 士卒에게 나눠 주었다”<sup>9)</sup>는 기록이 있다. 또한 1255년 몽고가 제5차 고려를 침입하여 철군할 때 몽고에 잡혀간 고려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00명이었다<sup>10)</sup>고 하니 몽고의 수차례 고려 침략으로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 중에는 학자·농민·문인·관료 등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여성도 포함이 된다. 필자는 당시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 갔던 사람들의 중국내 지역분포<sup>11)</sup>나 거주형태에도 상당한 특색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勞延煊은 이들 피로인들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보내져서 노예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원 세

8) (明) 宋濂 等撰, 『元史』(中華書局, 1978) 권2, 本紀 太宗3年 秋8月, p.3, “以高麗殺使者, 命撒禮塔率師討之.”

9) 『高麗史節要』(東國文化社, 1961) 17, 고종 40년 8월, p.395.

10) 『高麗史』세가 24, 高宗 41년 11월.

11) 吳松弟, 「夢(元)時期朝鮮半島對中國的移民」(『韓國研究論叢』 2), p.30. 원대에 고려 민중이 중국으로 들어온 수가 가장 많았는데 주요 분포는 遼東·大都·大同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이었다.

12) 勞延煊, 「論元代高麗奴隸與媵妾」(『慶祝李濟先生七十歲論文集』 台北, 1967), pp.1005-1007; 張東翼, 「元에 진출한 高麗人」(『民族文化論叢』 11, 1990), pp.39-43.

조는 “관군이 함부로 良家의 여자를 비녀로 삼는 것은 금한다고 하였지만,”<sup>13)</sup> 溟州의 아전 金遷의 모친처럼 비녀가 되어 농업 생산에 종사하거나 또는 주점의 시녀가 되었던 여성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sup>14)</sup>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성들 중에는 미혼·기혼이 있을 수 있고, 원나라에서 결혼이나 재혼도 행해졌을 것이다.

원나라는 고려를 복속시킨 뒤 혼인 정책으로 양국 관계를 결속시키려 하였다. 쿠빌라이는 원종의 세자, 즉 후일 충렬왕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보냄으로서<sup>15)</sup> 이후 백 여년에 걸치는 여원간의 통인이 시작되었다. 원 세조가 충렬왕 원년(1275) 10월에 岳脫衍과 康守衛를 보내어 下詔한 것에 의하면,

“너희 나라 여러 왕씨는 同姓과 결혼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이미 우리와 한 집안이 되었으니, 마땅히 서로 통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一家의 義理라고 할 수 있겠는가?<sup>16)</sup> 우리 태조 황제가 13개국을 동정함에 그 왕들이 다투어 美女와 良馬·珍寶를 바쳤다는 것은 너희도 들은 바일 것이다.”<sup>17)</sup>

라고 한 것은 양국 간의 혼인 관계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려와 원나라의 왕실 혼인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원나라의 공주들은 겁령구(K'ie-Lien-K'eu)라고 하는 私屬의 몽고인을 데리고 와서 사역시켰다. 고려 왕실에서 이들의 세력은 자못 컸으리라 생각되고, 고려 왕실에 몽고화 경향도 나타났다.<sup>18)</sup> 麗·元간

13) 『元史』 권10, 本紀 第十, 世祖七 至元十五年 春正月己亥條, p.197.

14) 『高麗史節要』 19, 충렬왕 2년; (明)藏晉, 『元曲選』(사부비요본), 酷寒亭, pp.5-6.

15) 원종 11년 2월에 연경에 가서 원의 都堂에 상서하여 婚姻을 청하자, 원 세조는 “達旦法에 通媒를 하면 合族하는 것이니 진실로 交親할진대 감히 허락하지 아니하라 ……지금은 다른 일로 와서 청함은 빠른 것이니 환국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 다시 청하면 허락하리라”(『高麗史』 元宗 11년 2월 甲戌條).

16) 『高麗史』 권28, 충렬왕1, 충렬왕 원년 10월 庚戌條, pp.568-569.

17) 위의 책.

18) 가장 먼저 고려 왕족과 몽고족 간의 혼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근대

의 왕실 혼인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있으므로<sup>19)</sup> 본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고려와 원의 통혼은 왕실 뿐 아니라 일반인들 간에도 성행했다.

13세기 몽고 사회는 一夫多妻制의 혼인 형태가 보편적이었으므로,<sup>20)</sup> 원나라 사신이 고려에 오면 媵妾을 맞아들이려고 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났다. 그래서 원나라 관료인 蘇天爵조차도 합법적으로 媵妾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고려 여자를 취하거나 고려에 사신 가서 妻妾을 삼는 것은 법으로 금하기를 청하였다.<sup>21)</sup>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암암리에 몽고 귀족의 축첩 행위는 계속되었다. 『出使蒙古記』에서도 몽고족의 관습에 정복지의 여성을 궁중으로 데려와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궁중으로 들어온 고려의 여성들은 후에 충신의 妻妾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sup>22)</sup> 원나라는 양국간의 결혼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童女를 물색하

학자 이능화이다(李能和, 『朝鮮女俗考』 권22, (四)“高麗王族與蒙古人婚姻”) 근래의 연구로는 蘇啓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元代史新探』, 新文豐出版公司, 1983), pp.238-239. 특히 <표1> 高麗王室婚姻關係와 <표2> 高麗王室蒙古后妃表를 참조하기 바람. 王崇實, 「元與高麗統治集團的聯婚」(『吉林師範學院學報』, 1992-4); 金成俊, 「麗代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의 位置에 대하여」(金活蘭記念『한국여성문화논총』, 1958년) 등이 있다.

19) 柳洪烈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 까지 약 80여년간 원나라에 간 처녀 공납 기사를 잘 정리해 놓았다(「高麗의 元에 대한 貢女」, 『震檀學報』 18, 1957, pp.35-37).

20) (英) 道森編, 呂浦 譯 周良霄 注, 『出使蒙古記』(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제2장 “關於他們的容貌, 他們的衣服, 他們的住處, 財產和婚姻”에 “每一个男人, 能供養多少妻子, 就可以娶多少妻子, 一个人有一百个妻子, 別有人有五十个, 還有人有十个……”라는 구절이 있다(p.8).

21) (元) 蘇天爵, 『滋溪文稿』(上海古籍出版社, 1993) 권26 《章疏 灾異建白十事》. pp.306-307. “比年以來, 朝廷屢遣使者至于其國, 選取子女, 求娶妾媵, 需索百端, 不勝其優至使高麗之民, 生女或不欲舉, 年長者不敢適人, 憤怨感傷, 無所伸訴, 方今遼東歲歉, 民適告飢, 和氣之傷, 或亦由此, 今後除內廷必合取索外, 其餘官員敢有不經中書擅自奏請取索高麗女子, 及因使其國娶妻妾者, 擬合禁治庶幾彰國家同仁之治, 慰小邦嚮化之心.”

22) 원 세조가 고려 미인 金長姬를 시종에게 하사한 것, 문종이 궁중의 고려여자 不顔帖你를 燕鐵木兒에게 하사한 것 등이 있고, 순제의 충신 康里人 脫脫

기 위해서 고려에 통혼령을 내렸고 고려 조정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충렬왕 원년(1275년)에 금혼령을 반포하였다.<sup>23)</sup> 이어 충렬왕 13년(1287년)에는 양가의 처녀는 먼저 관가에 보고한 뒤에 시집을 보내게 하고 만약 어길 경우는 벌하도록 하였다.<sup>24)</sup> 금혼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서는 사회적으로 각 종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양가에서는 어린 딸을 預婚이라는 조혼의 형식으로 시집보내거나<sup>25)</sup> 또는 머리를 깎아서 중의 행세를 시키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다.<sup>26)</sup> 충렬왕 33년 9월에는 16세 이하 13세 이상의 여자는 함부로 결혼할 수 없고 관가에 신고한 후에 결혼할 것이며 위반하는 자는 벌한다<sup>27)</sup>고 하였다. 이렇게 고려 조정에서는 “금혼령”·“결혼허가증” 등을 반포하면서 까지 고려 여자들을 모집하여 원나라 수도 대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원의 고려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불만을 야기시켰다. 당시, 고려 충렬왕 때 太府卿으로 있던 朴楡는(관품에 따른) “축첩론”을 주장하면서까지 결혼하지 않은 고려 여성들이 이민족 국가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sup>28)</sup>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박유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 명의 아

의 부인 趙氏도 또한 고려에서 온 여자였다.

23) 『高麗史』 권28, 충렬왕 원년 10월 壬子條, “以將獻處女于元 禁國中婚嫁”, p.569.

24) 『高麗史』 권30, 충렬왕 13년 12월 己巳條, “有旨良家處女先告官然後嫁之違者罪之. 因命許瑛等選童女.”

25) 金斗憲, 「朝鮮의 早婚과 그 起源에 對한 一考察」(『한국가족제도연구』에 수록되어 있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26)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洪奎이다. 홍규는 자기의 딸이 공녀에 뽑히자 이것을 면하고자 마침내 자기 딸의 머리를 깎아버린 것이 화근이 되어 본인은 멀리 海道로 귀양 가고 딸은 원나라 사신 阿古大에게 준 사건을 말한다.

27) 『高麗史』 충렬왕 33년 9월 癸酉條, “前王命都評議司, 女年十六歲以下十三歲以上, 毋得擅嫁, 必須申聞以後, 許嫁違者罪之.”

28) 太府卿朴楡上疏曰我國男少女多, 而尊卑止於一妻. 其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來娶妻, 無定限. 臣恐人物皆將北流. 令臣僚許取庶妻, 隨品降殺其數. 至於庶人得取一妻一妾, 其庶妻所生之子得仕於朝(『高麗史』 권106, 朴楡列傳).

내만을 취하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도 첩을 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가 많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걱정스러우므로 일처제를 버리고 관품에 따라 다처제를 허락하자

는 것이었다. 順帝때 원나라 정동행성에서 임직했던 李穀이 고려측의 의사를 대변하여 원나라 순제에게 공녀의 전면적인 폐지를 상소하였다.<sup>29)</sup> 앞의 박유의 “축첩론”이 특히 사대부가 부녀들의 강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고려 여성들이 원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지, 축첩을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또한 원나라 소천작의 상소도 원나라의 일부 귀족과 관료들의 축첩 행위가 고려 백성에 끼친 해의 심각성을 반영해 준다.

이러한 고려 여성 수난의 또 하나의 사례로 남송군과의 혼인 문제가 있다. 남송의 항복한 투항군의 결혼을 돕기 위해 원 조정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시대적으로는 童女の 모집보다 조금 앞선다. 원나라의 대외정복은 13세기 중반, 강남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남송에까지 파급되었다.<sup>30)</sup>

원나라가 남송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襄陽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sup>31)</sup> 몽고와 남송간의 전쟁은 南宋 理宗 端平 원년(1234년)에 시작되어 帝昀 祥興 2년(1279년)까지 45년 남짓 지속되었다.<sup>32)</sup> 그 중에서 원나라와 남송간의 정복전중 가장 격렬한 접전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襄陽과 樊城에서의 전투였다.<sup>33)</sup> 宋蒙의 襄樊 전투가 시작되기

29) 『稼亭先生文集』 卷8, “代言官請罷取童女書.”

30) 尹銀淑, 『蒙元 帝國期 窩忸忸家的 東北滿洲支配 -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8). 제3장 2절 몽케 카안의 南宋 원정과 타가차르의 襄陽府 퇴각사건.

31) 何忠禮·徐吉軍 著, 『南宋史稿』 (杭州大學出版社, 1999). pp.548-555. 黃寬重, 「宋元襄樊之戰」, (『大陸雜誌』 第4輯, 第4冊, 史學叢書); 尹銀淑, 『蒙元 帝國期 窩忸忸家的 東北滿洲支配 -中央政府와의 關係 推移를 중심으로-』 제3장 2절 몽케 카안의 南宋 원정과 타가차르의 襄陽府 퇴각사건.

32) 1271년 몽고제국이 국호를 元이라고 한 것을 전후하여 改元 전은 몽고군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改元 후는 元軍이라는 부르짖다.



전에 몽고군은 이미 중국 북부와 서남부 川西·西藏·雲南 등지를 점령한 상태였다.<sup>34)</sup> 1261년(宋 理宗 景定 2년) 宋將 劉整이 瀘州 지역을 몽고에 바치고 투항한 후 쿠빌라이에게 襄陽의 중요성을 건의하였다.<sup>35)</sup> 당시 襄陽 지역은 呂文煥이 襄陽守將을 맡아 방어전을 책임지고 지휘하고 있었다. 1268년부터 남송과 몽고는 지구전을 벌였다. 1269년 12월 呂文德이 사망하자 이듬 해, 정월 李庭芝를 京湖制置使로 임명하였다. 송조에서는 양양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派兵援襄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270년에는 殿前副 指揮使 范文虎를 파견하여 회남 일대의 군대를 총지휘하게 하였다. 그러나, 元軍은 1273년 1월 11일에 번성을 함락시킨 후 양양성으로 쇄도하였다. 그 해, 2월 당시 양양성을 책임지고 있던 呂文煥(呂文德의 동생)은 양양이 포위된 지 6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양양전의 실패를 계기로 남송 군대의 전투력은 하강하였고 남송은 얼마 안 있어 멸망하였다. 원나라는 양양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전투력이 뛰어난 남송의 生卷軍을 일본원정에 동원할 필요에서 고려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다.

### Ⅲ. 宋元軍官과 高麗女性的의 通婚

33) 周寶珠, 「南宋抗蒙的襄樊保衛戰」(『史學月刊』1982-6). 周寶珠의 논문은 襄樊 전쟁의 경과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원나라가 襄陽을 침입했을 때 송나라 여성들도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나라 병사가 襄陽 지역으로 침입해 왔을 때 吳源이 양양전에서 전사하자, 아내 盧氏는 (남편의) 시체를 거두고 아주 비통해 하며 《絕命詞》를 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34) 1253년 몽고가 大理國을 공격한 것은 남송을 멸망시킬 전쟁을 지지할 세력이 필요해서였다. 大理國을 멸망시킨 후 西南으로부터 남송 정권에 대한 鞞腹之舉의 계획을 세웠다. 蒙元 왕조에 귀순한 末代 大理國왕 段興智가 데리고 간 군대가 鄂州를 공격하는 “寸白軍”의 白族 사병이 되어 12월에 악주에서 쿠빌라이 군과 만났다. 그러나 촌백군은 악주에서 포위당하여 풀러난 후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湖南 桑植 등의 현에 定居하게 된다.

35) 周密, 『癸辛雜識』別集下. “攻蜀不若攻襄, 無襄則無淮, 無淮則江南唾手下也.”

먼저, 원나라에 항복한 남송 군인과 고려 여성간의 통혼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남송의 군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송 군대의 명칭은 아주 복잡하였는데 원대의 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新附軍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이 있었다. 『元典章』 권34 「兵部一·附軍」 중 “新附生熟券軍·廂·禁·土·軍·通事馬軍·手額號正軍 등 이다. 이 중에서 “新附生熟券軍”<sup>36)</sup>은 원래 송대 모군제도하에 士兵들에게 발급하는 糧餉 보조를 받는 증서인 “生熟口券”에서 유래된 것이다.<sup>37)</sup> 남송대 주둔지에 주둔하는 군대에 대해서 보통 가속이 딸린 군인에게는 熟口券을 발급하고 가속이 딸리지 않은 출정 군인에게는 生口券을 발급하여 生熟券軍의 구분이 있었다.<sup>38)</sup> 생권군은 비교적 나이가 젊고 훈련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前 남송 군인과 부대를 新附軍<sup>39)</sup>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원나라에서 남송의 항복한 군인들에게 전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세조 至元10년(1273) 원군이 襄樊을 함락시킨 이후였다.

앞 장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襄樊 生券軍은 몇 십만 元軍의 맹렬한 침공에 6년 남짓의 긴 기간 동안 저항하다가 투항했으므로 원나라로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다. 원 조정에서 남송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宋의 守將인 呂文煥에게 “侍衛親軍指揮使·襄漢大都督”이라는 직함을 주어 대우하였다. 그 휘하의 將校들에게도 차등 있게 대우하였다. 한편, 숙권군과 城居의 백성들은 그대로 양양에 거주하게 하고 전도와 耕牛를 주었다. 생권군은 나누어 萬戶翼에 예속하도록 하거나,<sup>40)</sup> 和林·八達山으로 가게 하여 屯田에 종사케 하거나<sup>41)</sup>

36) 남송의 襄樊守軍에게 口券을 支領한 것은 원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므로 원나라의 사료에서도 “襄樊生熟券軍”이라고 하였다.

37) 王曉欣, 「元代新附軍述略」(『南開學報』(哲社版), 1992), pp.52-62.

38) 『續文獻通考』에 의하면 “……臣等謹按宋末有生券軍熟券軍(……生券人之語當即招募之民兵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安部健夫, 「生熟券支給制度略考」(『元代史の研究』, 創文社, 1972), pp.319-362. 원나라 사람들은 생권군과 숙권군이 각기 다른 군사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39) 王曉欣, 「元代新附軍述略」(『南開學報』(哲社版) 1992), pp.52-62.

40) 『元史』 권8 세조본기 5, 至元 10년 三月記事, 至元 10년 七月記事, “熟券軍

시위군에 충당케 하였다.<sup>42)</sup> 후에 생권군의 처자가 없는 사람은 경사로 오게 하여 병사를 더해 주어 호송하였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sup>43)</sup> 나머지 생권군인은 원나라 수도인 대도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원 조정에서는 이들 新附軍에 대해 이전 송나라의 예에 따라 매월 錢糧을 지급하고 또 차출이 되면 별도로 生券을 지급하였다.<sup>44)</sup> 뿐만 아니라 생권군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sup>45)</sup> 항복한 남송 생권군인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과연 고려 여성과의 결혼만으로 해결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고려 여성과의 결혼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몽고의 다른 피정복지에서도 통혼이 행하여졌을 가능성은<sup>46)</sup> 다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원나라 세조 至元 10년(1273)에 송 양양부의 투항 생권군의 일부가 고려로 오게 되는 경위를 살펴보겠다.<sup>47)</sup> 『元史

并城居之民，仍居襄陽，給其田牛；生券軍分隸各萬戶翼。”

41) 『元史』 권8 세조본기 5, 『元史』 세조본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元 조정에서는 생권군과 숙권군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至元11년 夏4月辛未, “賜襄樊戰死之士249人之家, 每家銀百兩”; 秋7月乙酉徙生券軍81人屯田和林. 至元12년 5月 丙戌, “以三衛新附生券軍赴八達山屯田.”

42) 『元史』 권9 세조본기 6, 至元13년 6月己巳, “命東征元師府, 選襄陽生券軍五百, 充侍衛軍.”

43) 『元史』 권8 세조본기 5, 秋七月 丙戌.

44) 海王屯古籍叢刊 『元典章』 (中國書店, 1990) 권34, 兵部一·新附軍·招誘新附軍人, p.505.

45) 『元史』 권8 세조본기 5, 9月 甲申, p.151. “襄陽生券軍至大都, 詔伯顏諭之, 釋其械繫, 免死罪, 聽自立部伍, 俾征日本, 仍敕樞密院具鎧仗, 人各賜鈔娶妻, 於蒙古、漢人內選可爲率領者. 肖郁到高麗強令高麗爲其選拔“沒有丈夫的婦女一百四十名. (伯顏(Bayan)대해서 Francis W. Cleavee, “The biography of Bayan of the Burin in the Yuan Shih” (HJAS 19, 1956), pp.185-307를 참조하기 바람).

46) 高柄翊,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東亞交涉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pp.136-183.

47) (元) 姚樞, 『牧庵集』(四部叢刊 正編) 권15, 中書左姚文獻公(樞)神道碑, p.136에 의하면 이 때 熟券軍은 河北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에 의하면,

“추밀원에서는 생권군 가운데 妻子가 없는 사람을 경사에 오게 하였는데 노약자나 병이 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 해, 9월에 양양 생권군이 대도에 이르러 사면을 요청하고 스스로 부대를 조직하여 일본 원정을 요청하자, 몽고와 漢人내에서 관원을 뽑아 지휘하게 하였다.”<sup>48)</sup>

고 되어 있다. 원 조정에서는 송의 투항 생권군인이 일본 원정을 가는데 대한 일종의 대가로 고려 원종 15년 3월 壬寅(1274년)에 肖郁을 媒聘使로 삼아 고려로 가게 하였다. 원나라 中書省 牒에 의하면

“남송 양양부(襄陽府) 생권(生券) 군인이 처실(妻室)을 취하기를 요구 하였으므로 선위사 초옥(肖郁)을 보냄에 관건(官絹) 천육백사십단을 보내어 고려로 가져 가게 하였다. 유사를 보내어 장가가는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sup>49)</sup>

는 내용이다. 원나라의 중서성 牒을 통해 남송 양양부 생권 군인을 장가보내려고 한다는 것, 결혼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초옥을 보낸다는 내용은 있지만,<sup>50)</sup> 어떤 여성을 모집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매빙사 초옥은 “남편이 없는 부녀 140명”을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독촉이 심하였다. 원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민간 여성의 통혼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대상도 남송의 투항군인이었으므로 당시 고려인들이 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을지는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고려에서는 즉각 “結婚都監”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이때부터(3월) 가을까지 원나라에 보낼 여성을 선발할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절요』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8) 『元史』 권8 세조본기 5, 병술조.

49) 『元史』 권8 세조본기 5, “南宋襄陽府生券軍人 求娶妻室, 故差委宣使肖郁 押官絹一千六百四十段前, 去下考麗國. 令有司差官一同, 求娶施行.” 『高麗史』 권 27 元宗 世家 3, p.561, “肖郁이 고려에 와서 남편이 없는 부녀 140명을 선발하였다”고 되어 있다.

50) 『元史』 권8 세조본기 5, 9月 甲申, p.151, “人各賜鈔娶妻.”

즉,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부녀를 찾으니 蠻子를 장가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여염의 여성 140명을 찾아(뽑아) 蠻子에게 나누어 주었다. 蠻子들이 즉시 데리고 북쪽(원)으로 가는데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으며 보는 사람도 슬퍼서 탄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였다.<sup>51)</sup> 이능화의 『朝鮮女俗考』에도

宋 襄陽府 군인들이 아내를 취하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선위사 肖郁을 보내어 매빙사로 삼아서 남편이 없는 여자 140명을 물색하였다. …… 겨우 그 수를 채워 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북으로 돌아가게 하니 울음소리가 진동하였다.<sup>52)</sup>

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蠻子는 李能和씨도 인정하는 것처럼 남송사람을 이름이다.<sup>53)</sup> 이 때 겨우 그 수를 채웠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모집한 여성들은 대체로 “여염의 혼자 사는 여성”, “逆賊女”, “僧人の 딸”로 민간의 하층 여성이었다. 원나라 측에서는 결혼 비용의 명목으로 각 여인에게 資粧絹이라 하여 한 사람에게 絹 12필씩을 주고 만자들과 결혼시켰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때, 원나라가 생권군을 우대하여 결혼하는 것을 도와준 것은 앞의 『元史』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274년 冬 10월의 제1차 일본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sup>54)</sup> 원나라는 계속해서 蠻子軍 1천 4백명을 보내 海州, 鹽州, 白州의 세 주에 나누어 있게 하였다.<sup>55)</sup> 이 때 보내온 만자군과 고려여성간의 결혼도 행해졌을 것

51) 『高麗史節要』 권19, p.455.

52) 李能和, 『朝鮮女俗考』 권23, (六)“高麗民女與蒙古人婚姻”條. “宋 襄陽府軍이 求娶妻室이라 故로 差委宣使尙郁爲媒聘使하여 求無夫女一百四十名하야…… 僅盈其數하야 分與蠻子하야 北還하니 哭聲이 震動이라.” 이능화는 “살펴보건데 원나라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을 가리켜 蠻人이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송나라 사람을 무시해서 부르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53) 李能和, 『朝鮮女俗考』 권23, (六)“高麗民女與蒙古人婚姻”條.

54) 『元史』 卷十一 本紀 第十一 世祖八, pp.226-227.

이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 忠烈王 2년(1276年)3월 閏月 甲子에 원나라는 또 楊仲信을 보내어 폐백을 가지고 고려로 보내왔는데 그 목적은 歸附軍 500명의 처실(妻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sup>56)</sup> 충렬왕은 즉각 “結婚都監”을 “寡婦處女推考別監”으로 명칭을 바꾸고, “寡婦處女推考別監”의 正郎 金應文 등 다섯 사람을 여러 도에 보냈다. 과부처녀추고별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적으로 원나라에 보낼 과부와 처녀들을 모집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렬왕은 “寡婦處女推考別監”을 다시 “歸附軍行聘別監”이라고 명칭을 고쳤는데,<sup>57)</sup> 여기서 그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 4월 丙子에 원나라는 귀부군을 해산하여 반 수를 원나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이 때 책임자로 있던 김응문 등도 돌아갔다.<sup>58)</sup> 그래서 500명의 귀부군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려는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59)</sup>

1276년에 귀부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처(妻室)를 구하려고 가져왔던 명주를 다루가치에게 분부하여 거두어들이게 하였는데……”<sup>60)</sup> 즉, 원 조정은 두 번째로 귀부군을 위하여 매빙사를 고려에 보내어 아내를 구해 줄려고 했지만 성공

55) 『高麗史節要』 권19, 을해원년(1275) 송 효공황제 德祐 원년: 원 지원 12년. 충렬왕 1, p.545. 海州는 황해 해주이고, 鹽州는 황해 연안이며, 白州는 황해 백천이다.

56) 『高麗史』 권28, 충렬왕·世家三, pp.570-571.

57) 『高麗史』百官二, 安鼎福, 『東史綱目』 권 12 상, 丙子年 충렬왕 2년, 『高麗史節要』 권 31 百官二.

58) 『高麗史』 권28, 충렬왕·世家三, p.571. 충렬왕3년(1277) 2월 乙亥의 기록에 의하면, “帝勅還歸附軍五百人, 舉國皆喜”라고 되어 있다.

59) 『高麗史節要』 권19, 정축 3년(1277) 송 경엄 2년; 원 지원14년, 충렬왕1, p.565.

60) 『元史』 권8 世祖 5 병술조.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다루가치와 征東行中書省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W. E. Henthorn, “Korea the Mongol Invasions”(Leiden, 1963) pp.194-215; 池內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東洋學報』18-2, 1929).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원나라로 돌아갈 때에 결혼하기 위해 본국에서 가져왔던 예물을 다루가치를 통해 거두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귀부군”이 과연 원나라에서 온 귀부군인가? 아니면 원나라에 귀부한 고려의 歸附軍인가? 고려의 귀부군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sup>61)</sup> 연구자는 이 때 귀부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려의 귀부군이라는 해석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歸附軍이 사용할 농기구도 고려로 하여금 사들이도록 했는데……”<sup>62)</sup>, “귀부군이 돌아가니 온나라가 모두 기뻐하였다”<sup>63)</sup> 라는 기록을 보면, 이 군대는 원나라에서 온 귀부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당시 江南의 新附軍은 장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원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결혼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결혼 정책은 또한 “所生兒男, 繼世爲軍”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sup>64)</sup> 그렇다면 물론 양국 간에 결혼이 고려여성들의 자의는 아니었다라 할지라도 이국의 군인과 고려여성간의 통혼에 대해 그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원 조정에서 투항 생권군을 정부 차원에서 복속국의 여성과 결혼시킨 것은 이민족(중국인)으로서 이민족을 안무하는 以夷制夷 정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장 저항이 심하였던 남송 군대의 반항 의식을 약화시키고 원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사서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에서 고려 여성에 대한 이미지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두 번째의 대규모 고려 여성의 모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다루가치와 고려

61) 김상기, (신편)『고려 시대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574.

62) 『元史』 권28, 忠烈王 三年二月 丁卯, 『高麗史』에 의하면, “又奉牒歸附軍合用牛具, 擬於小邦和買不許買直照得. 至元十三年歸附軍回還者, 其求到妻室匹絹分付達魯花赤收管, 請於內發取衣至元九年, 種田軍牛具買直每頭絹四匹舊例和買”라고 되어 있다.

63) 金昌淑 譯註, 『〈高麗史〉對外關係史料集』(민족사, 2001), p.147.

64) 海王屯古籍叢刊『元典章』(中國書店, 1990) 권34, 兵部一·軍戶·無夫軍妻配無婦軍, p.498. “緣江南新附軍人, 多有只身不能求娶, 無以繫戀, 因而逃避. 今來議得, 驅虜之婦, 從本管軍正官配合, 只身軍人爲妻外, 据立媒下財求娶者聽.”

여성과의 산발적인 결혼도 있었다. 다루가치를 군인과 함께 다루는 것은 약간 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통혼을 중심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주둔군에는 남송군인만이 아니라 몽고인들도 많았다. 주둔관과 고려 여성간의 혼인도 역시 다루가치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다루가치에 임명된 사람은 몽고족 이외에도 漢族을 포함한 각 민족이 있었다.<sup>65)</sup> 그러나 고려나 탐라로 왔던 다루가치는 주로 몽고족이었다. 元 世祖 至元 8년에 다루가치 脫朶兒<sup>66)</sup>가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청혼하자, 金鍊의 딸과 결혼을 주선했다.<sup>67)</sup> 至元 20년에는 탐라지역에 주둔하던 다루가치 塔刺赤이 몸소 충렬왕에게 말을 바치고 청혼하자 충렬왕이 內侍 鄭孚의 딸과 결혼하게 하였다.<sup>68)</sup> 다루가치의 결혼도 생권군이나 귀부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려 조정의 주도로 주선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駐屯軍의 歸還과 高麗女性

1271년 고려에 둔전이 설치된 다음부터 1278년 7월 쿠빌라이가 원군의 철수를 명하는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고려는 원의 東京行省, 屯田經略司와 다루가치, 元帥府와 다루가치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元에서는 탐라가 차지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려 하였다.<sup>69)</sup> 그러나 탐라 지역이 원나

65) 元 王磐 撰, 『元文類』 권58, 中書右丞相史公神道碑, “國朝之制, 州府司縣各置監臨官, 謂之達魯花赤”; 潘修人, 「元代達魯花赤用人述論」(『內蒙古民族師院學報(哲社版)』 1992-4).

66) 池內宏, 「高麗に駐在した元の達魯花赤について」(『東洋學報』 18-2, 1929). pp.279-280. 脫朶兒는 元宗 11년(至元 7년) 5월에 와서 元宗 12년(至元 8년) 10월에 죽었다.

67) 『高麗史』 元宗 世家 12년 2월.

68) 『高麗史』 忠烈王 4년 9월.



라의 숙원 사업인 남송 정복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원나라는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후 탐라 지역에 “耽羅招討司”를 설치했으며,<sup>70)</sup> 鎭邊軍 1700명을 주둔시켰다.<sup>71)</sup> 후에 金方慶과 혼도·홍다구 등으로 하여금 여몽 연합군 3만 5백 여 명을 징발하고 또 대소 선박 9백여 척을 거느리고 충렬왕 즉위년 10월에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여몽연합군은 合浦를 출발하여 원정 길에 올랐으나 도중에 폭풍우로 실패하였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들이 원나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은 고려 국내의 정치적인 사건이나 장기간의 이국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먼저, 2차에 걸친 金方慶 역모 사건으로<sup>72)</sup> 주둔군이 귀환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원나라에서는 1278년에 충렬왕의 입조와 홍다구의 소환을 명하였다. 충렬왕이 입조하여 김방경의 무혐의를 확인하고 그 해(충렬왕 4년) 7월에 명을 내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忻都·茶丘軍·種田軍·合浦鎭戍軍 등의 부대를 본국으로 철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지어 원나라의 다루가치 張國綱조차도 “지금 다루가치 원수(元帥)와 관군들이 모두 돌아가니 고려에게 다행이다”<sup>73)</sup>라고 하였을 정도이니, 이들 주둔군이 고려에 끼친 피해의 정도

69) 『元高麗紀事』(京城 文殿閣書莊, 발행년도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耽羅條, p.46; 『元史』 권208, 탐라전. 몽고제국에게 제주는 단순한 반몽 세력의 거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고려·남송·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요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70) 탐라초토사로 임명되었던 失里伯은(『新元史』 권 152, 失里伯列傳) 耽羅초토사로 있다가 세조의 명을 받고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에 襄陽路의 신군을 거느리고 승상 伯顔을 따라 남송 정벌에 참여하였다. 탐라초토사는 후에 達魯花赤總管府, 軍民按撫司 등으로 개칭하였고 中書省, 遼陽行省 征東行省 등의 기구에 예속되었다.

71) 『元高麗紀事』, p.47.

72) 권선우, 「金方慶 誣告 사건의 전개와 그 성격」, 『인문과학연구』 5호, 1999).

73) 『高麗史』 권28, 忠烈王 4年 9月 丙戌條. “今達魯花赤元帥及官軍皆還, 一國之福也”. 張國綱은 충렬왕 원년(至元12)년 7월(?)에 와서 충렬왕 4년(至元15년) 8월에 돌아갔다(앞의 池內宏 논문 참조).

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충렬왕 5년(1279) 春 正月 丙寅에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를 알현하였다. 御史大夫 月列倫·樞密悖刺 등이 왕에게 타이르기를 “흔도, 다구가 鎭邊 種田軍<sup>74)</sup>이 돌아올 때 그 처자들이 모두 관리들에 의하여 억류되어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러느냐?<sup>75)</sup>” 라고 물었다. 여기서 種田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간단히 정의한다면 경작하여 軍餉을 공급하는 둔전군으로 특히 농업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몽고군 등에 포로로 잡혀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을 가리킨다.<sup>76)</sup> 앞의 원 세조의 질문에 충렬왕이 대답하기를

“지난 여름에 황제의 명을 받들고 귀국시킬 때, 우리가(고려) 파견한 관원이 원수부와 함께 관군의 처첩의 결혼문서가 있고 없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sup>77)</sup> 규례에 따라 데리고 가게 한 것이지 감히 마음대로 억류시킨 것이 아닙니다<sup>78)</sup>”

라고 주장하였다. 고려측에서는 함부로 고려 여성이 원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문서의 유무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더 이상의 무고한 여성들이 원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홍다구<sup>79)</sup>가 군인의 처자 128명을 (돌려 받

74) 李玠夷, 『『高麗史』元宗 忠烈王 忠宣王世家 中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동양사학연구』 88, 2004.9), pp.95-116. 이개석 교수는 제2장 “몽고군의 고려둔전과 種田軍”에서 고려 둔전의 설치와 배경, 둔전군과 종전군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람. 『高麗史節要』 권19, 기묘 5년(1279) 송상흥 2년; 원 지원 16년, 충렬왕 2, p.595.

75) 『高麗史』 권29, 충렬왕·世家三, p.588.

76) 太田彌一郎, 「元代の種田戶について」(『一關工業高等專門學校研究紀要』 14, 1979); 姚家積, 「元代的“驅軍”和“軍驅”」(『中國史研究』 1985-1).

77) 원나라의 婚律에 의하면 첩을 맞이하는데 婚書를 준비해야 하고, 財禮를 내려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郭成偉 點校, 『大元通制條格』, 法律出版社, 2000) 권4, 戶令, 嫁娶, pp.48-54).

78) 『高麗史』 권29, 충렬왕·世家三, p.588.

79) 洪茶丘는 福源(고종 18년 撤禮塔이 침략해 왔을 때 항복하였음)의 둘째 아들로 撤禮塔이 고려 공략시 종군하였다. 세조가 그 驍勇함을 알고 아주 총애

기를) 칭하자 충렬왕은 “만약 정말로 원나라 군인의 처자인지를 분간해 내려고 했던 것이 불법이라면 (원나라) 군인들이 제멋대로 양민의 자녀를 협박하여 강제로 (남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적법이라고<sup>80)</sup> 따진 데서도 둔전 군인들이 민간에 끼친 불법 행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둔전군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결혼한 여성까지도 마음대로 탈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 세조도 할 수 없이 “군인의 아내가 된 여자로서 원래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원래)남편에게 돌아가게 한다”<sup>81)</sup>는 조처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앞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삼별초의 난 진압 후에 탐라에 많은 주둔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몽고는 탐라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제주도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원의 지배하에 예속시켰다.<sup>82)</sup> 이들 주둔군은 대부분 몽고 초원에서 왔으므로 낮은 탐라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원나라 세조 21년(충렬왕10, 1284) 가을 7월 정해(11일)에 塔刺赤이

“頭輦哥 국왕이 고려에 수자리 나갈 때 旺遠 등이 거느린 군사 4백 명을 징발하여 갔었다. 지금 頭輦哥는 이미 돌아왔으나 군사는 탐라에 머물러 있어 그 처자와 떨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마땅히 다른 병사로 하여금 庚戌에 하십시오”

하였다. 이전에 元이 아버지 복원에게 내린 호부를 차게 하고 아버지의 직책인 管領歸附高麗軍民總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또 원이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때는 監督造船軍民總管이 되었고, 일본 원정시에는 東征副元帥, 東征都元帥가 되어 고려의 관민에 대해 모함과 행패를 부렸다(『元史』卷154, 열전 41, 洪福源; 『高麗史』卷130, 列傳 43, 叛逆4, 洪福源) 홍복원 일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周采赫, 「洪福源의 一家와 麗元關係」(『사학연구』 24, 1974)를 참조 바람.

80) 『高麗史』 권29, 충렬왕·世家三, p.588.

81) 위의 책.

82) 金九鎮, 「麗·元の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 -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 雙城總管府 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國史館論叢』 7, 1989), pp.65-92.

라고 아뢰었다.<sup>83)</sup> 탐라 지역으로 왔던 주둔군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가족은 몽골에 있는 군인들이었다. 그러므로 伯顏 등이 “고려 군사 1천 명으로 탐라를 지키게 하고 그 곳에 머물러 수자리 사는 몽골군 4백 명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니 이에 따랐다. 그래서 원 세조 23년(충렬왕 12, 1286) 5월 을유(19일) 탐라에 수자리 살던 병사 4백명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물론 이 때 탐라에서 몽고로 귀환했던 주둔군들이 불법으로 탐라 여성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은 없다. 그렇지만 귀환했던 주둔군의 수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면 남아 있던 원나라 주둔군과 탐라 여성 간에도 통혼이 행해졌을 것이나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고려에 주둔하였던 군인이 부당하게 良家의 자녀를 娶妻하거나 노비화하여 철군할 때 함께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고려 조정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sup>84)</sup> 원 조정은 송의 투항 군인의 결혼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원나라 둔전군관들은 불법적으로 양민의 자녀를 협박하여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단지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납치된 양민 유부녀를 색출해 내는데 주력했을 뿐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할 형편이 못되었다. 원나라 군민과 고려 여성간의 혼인은 일찍이 원 세조도 “達旦의 법에 通媒를 하면 合族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매빙사를 보내고 결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혼인의 형식을 띠지만 역시 고려로서는 어떠한 실리도 취하지 못하고 무고한 여성들만 원나라로 유입되어 가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당시 원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처자를 돈으로 사지 않으면 결혼이 어려웠던 것을 보면,<sup>85)</sup> 복속국인 고려에도 폐백을 마련하면서 결혼을 추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

83) 『元史』 권8, 세조본기.

84) 『高麗史』 권27, 원종 14년 2월 병신; 『高麗史』 권28, 충렬왕 4년 7월 신축, 정미.

85) 『元典章』 권34, 「兵部一·軍戶·無夫軍妻配無婦軍」; 『出使蒙古記』 제2장, p.8, 제7장, p.121, “婦女們的義務和他們的工作”에 의하면 “至于們的婚姻, 您必須知道, 在那里, 一个人如果不購買妻子, 他就不能有妻子.”

러나 고려와 원간의 혼인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의 반강제 혼인이었으며, 이러한 혼인관계는 바로 양국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sup>86)</sup> 남송의 투항군인이나 다루가치의 경우처럼 고려 여성들이 그 결혼이 달갑지 않다 할지라도 일정한 결혼 절차를 거치는 합법적인 혼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 외, 많은 원나라 주둔군은 민간에서 무수히 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軍人이나 官僚의 처첩으로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원나라로 갔던 고려 여성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당시 중국은 여러 민족의 잡거와 통혼으로 토착과 외래 각 민족 간의 민간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대부분 고려에서 온 중하층 여성들은 특정한 몽고 이름이 없이 본국의 국명에 따라 단순히 “高麗氏”<sup>87)</sup>라고만 칭해지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중국으로 온 고려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등은 당연히 원 사회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원나라 말기 順帝때 기황후의 책봉을 둘러싸고 이에 반발한 원나라 관료들이 일찍이 원 세조가 고려 여성을 천하게 여겨 입궁시키지 못하게 하였다<sup>88)</sup>고 하는 기록이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원나라 상층 관원 간에는 고려 여성을 처첩으로 맞는 것이 유행이었다. 『庚申外史』 권하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기황후가 고려의 미인을 많이 구해 두었다가 대신 중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고려여자)들을 선물로 주었다. 경사의 달관이나 귀인은 반드시 고려의 여자를 얻은 연후에야 名家가 될 수 있었다……”<sup>89)</sup> 이처럼 당시 고려 여성을 처첩으로

86) 蘇啓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元代史新探』, 新文豐出版公司, 1983), p.234.

87) 楊維禎, 「元故中奉大夫浙東尉楊公神道碑」(『全元文』, 鳳凰出版社, 2004) 권 1317, p.48-50, “公娶某氏, 次娶高麗氏.”

88) (명) 權衡, 『庚申外史』(中州古籍出版社 任崇岳箋證本, 1991) 第12項, 권하, p.96.

89) 앞의 책. “兩月不到後宮, 祗后無可奈何, 乃蓄高麗美女, 大臣有權者, 輒以此女送之. 京師達官貴人, 必得高麗女, 纔爲名家. 高麗女婉媚善事, 人至則立見奪寵也. 自至必以來, 宮中給事使令, 大半爲高麗女, 以故四方衣服靴帽, 大抵皆依

맞는 것은 곧 권세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원나라 至正 이후로 궁중의 給事 使는 태반이 고려 여성이었다. 원나라 상층사회에 고려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사방의 의복, 褂帽, 기물은 모두 고려의 스타일을 따랐다.” 심지어 시중드는 사람으로도 고려 여성은 인기가 있었다. 葉子奇도<sup>90)</sup> “北人, 女使는 반드시 고려의 여성을 구해야 하고, 家童은 반드시 黑厮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환할 수 없다.<sup>91)</sup>고 하였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고려 여성들이 매력적이었을까? 앞에서 남송의 투항 생권군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으므로 여염의 혼자사는 여성을 선발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루가치 脫朶兒의 경우는 집안과 미모를 둘 다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보통 원나라에서 시중드는 고려 여성들은 婉媚하고 사람을 잘 섬긴다(받든다)는 이유로<sup>92)</sup>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원나라 궁중이나 민간에 고려인이 많아지면서 고려 신발의 스타일은 “一時所尙”이 되었으며,<sup>93)</sup> 궁녀들의 옷차림도 고려의 스타일을 숭상하였다.<sup>94)</sup> 당시 일부 사람들은 고려의 신발이나 복식이 세련된 옷차림의 상징이 된 것에 불만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내심 고려 문화에 대한 배척을 드러낸 것이다.<sup>95)</sup> 이렇게 고려 문화에 대한 배척은 일부에 불과했고, 실제로 원나라에서 고려풍의 영향은 좀 더 광범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高麗矣.”

90) 葉子奇, 『草木子』(元明史料筆記叢刊, 中華書局, 1983) 권3하, 「雜誌篇」, p.63.

91) (명) 藏晉, 『元曲選』(사부비요본), 酷寒亭, pp.5-6.

92) 앞의 책, 『庚申外史』, p.34, “高麗女子以婉媚見稱於元代, 宦官之家, 競相收納麗女爲妻妾侍婢, 元廷本身也, 屢屢詔令, 高麗貢女爲宮女”. 『益齋亂稿』(麗季名賢集本) 권9상, p.18.

93) (원) 陶宗儀 撰, 『南村輟耕錄』(中華書局, 1997) 권28, 處士門前怯, 元明史料筆記, p.187.

94) 『海東釋史』(조선고서간행서본), p.463.

95) 『南村輟耕錄』(文化藝術出版社, 1998년) 권28, “處士門前怯薛”, pp.346-347.

원대 사료중 “高麗氏守節”이라는 항목을 두어 고려 여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sup>96)</sup> 이는 바로 고려 여자가 남편에 대해 정조를 지킨 것을 이룸이다. 원나라의 혼인풍속에는 고래로 收繼婚의 풍속이 있었다. 수계혼은 “轉房婚”이라고도 칭해지는데, “부녀가 남편을 잃은 후, 원래 남편의 친숙에게로 改嫁하는 특수한 혼속”을 말한다. 收繼 혼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형수를 처로 삼는 것, 동생이 죽고 나서 형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는 것으로 同輩간의 收繼이다. 다른 하나는, 숙부나 백부가 죽고 나서 조카가 숙모나 백모를 아내로 삼는 경우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부인으로 삼는 것으로 異輩간의 收繼이다.<sup>97)</sup> 원나라 법률에서는 諸 漢人이나 南人에게는 수계혼을 금하였다.<sup>98)</sup> 당시 몽고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려인은 漢人으로 분류되어졌으므로,<sup>99)</sup> 수계혼이 금지되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 여성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계혼에 반대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끈다. 즉,

원나라 중서 平章의 측실(側室)<sup>100)</sup> 고려씨는 賢行이 있었는데 平章이 죽고 나서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正室의 아들 拜馬朵兒赤이 그 미모를 탐내어 아내로 삼고자 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다. 이에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太師 伯顏에게 바치자 백안이 기뻐하여 바라는 바를 묻자 드디어 일의 전모를 고백하였다. ……성지를 만들어 拜馬朵兒赤은 小母 高麗氏를 收繼하라고 명하였다. 고려씨는 밤에 親母와 함께

96) 『南村輟耕錄』 권15, “高麗氏守節”, p.187.

97) 秦新林, 「元代收繼婚俗及其演變與其影響」(『殷都學刊』, 2004), pp.69-70; 楊毅, 「說元代的收繼婚」(『元史論叢』 第5輯, 北京: 中華書局, 1993), pp.273-277.

98) 『元史』 권103, 刑法 2, p.2644.

99) 陶宗儀, 『南村輟耕錄』 권1 氏族, p.13.

100) 『禮記』 內則에 의하면 “聘即爲妻, 奔即爲妾”이라 하였다. 원나라 사람들이 첩을 칭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 학설이 있다. 次妻라고 하는 것과 側室이라고 하는 것이다. 첩을 次妻라고 칭하는 것은 원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첩을 측실이라고 하는 것은 漢나라에서 기원한다(王曉清, 『元代社會婚姻形態』, 武漢出版社, 2005).

담을 넘어 도망하여 삭발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는 것이다.<sup>101)</sup> 당시 大都에는 다양한 부류의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고려인에 의해 창건·운영된 불교 사원도 있었다.<sup>102)</sup> 위의 수계혼에 반대하여 비구니가 된 고려씨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가며, 이러한 고려 여성의 행동은 심지어 몽고 귀족에게 찬탄을 받기도 하였다.<sup>103)</sup>

한편, 어떤 고려씨는 심지어 그 남편 宣慰副使 孛羅帖木兒이 至正 27년(1367) 12월에 전쟁에서 죽자, 사람들에게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곧바로 장작을 쌓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에 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sup>104)</sup> 이를 통해 몽고 가정에 융합되어 살아간 고려 여성들이 발휘한 고려 전통 문화의 영향(한문화)을 재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여성들은 고유 문화의 보급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사회와 문화에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 V. 맺는말

본고에서는 원 세조 때부터 시작된 여·원 양국 간의 통혼정책이 원 조정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宋元 軍官이나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주

101) 『御定入即衍義』 권8에 의하면, “中書平章闊闕歲之側室高麗氏有賢行, 平章死, 誓弗貳活”라고 되어 있다. 陶宗儀, 『南村輟耕錄』 권15, “高麗氏守節”, p.187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02) 李穡, 『牧隱文藁』 권14, 碑銘, 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 “……師自天曆褫僧衣, 大府大監 察罕帖木兒之室金氏亦高麗人也. 從師出家買宅澄清里, 闢爲佛宮, 迎師居之. 師題其額曰法源.” 윤기엽, 『高麗後期 寺院의 實狀과 動向에 관한 研究』(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제3장 元皇室과 在元 高麗人 관련의 주요 사원을 참조하기 바람.

103) “誰無妻子! 安能相守至死. 得有如此守節者? 莫大之幸 而反坐以罪, 恐非我治朝之盛典也”(앞의 『南村輟耕錄』 권15, “高麗氏守節”).

104) 『元史』 권208, 列傳 88, 列女 2.



둔관과 고려 민간 여성간의 통혼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몽고가 중국을 통일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중국 남부의 襄陽과 樊城 지역이었다. 宋將 呂文煥이 원나라에 투항한 이후 원 세조는 명령을 내려 그가 거느린 생권군을 수도인 大都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원 세조는 남송의 투항 生券軍을 일본 원정에 동원하기 위해 고려 여성과의 결혼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고려와 탐라 지역에 상당수의 몽고 관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려의 민간 여성과 통혼하였다. 게다가, 원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던 축첩제의 풍속에 의해 원나라 관료들이 고려에 사신을 와서 媵妾을 취하는 예가 빈번하였다. 원 조정에서 충신에게 여자를 하사하는 풍속 등도 고려 여성들이 원나라로 가게 되는데 일조하였다. 고려 여성들은 본국에서의 출신에 따라 군인의 처, 고위 관료의 처첩이 되었는데 대체로 남송 투항군인의 아내가 된 사람은 중하층 여성이었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元軍의 잦은 횡포로 인해 고려 내부에서 둔전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고려내의 정치적 사건, 일본 원정의 실패로 고려에 있던 주둔군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 때, 상당수의 고려 여성들이 자의든 타의든 원나라로 가게 되었다.

원나라는 정복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宋元 軍인과 고려 여성의 통혼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 조정은 통혼을 위해 고려에 전문적인 결혼 담당 매빙사를 파견하였고, 고려에서는 결혼 담당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둘째, 남송말의 생권 군인이건 고려에 주둔한 원나라 軍官이건 간에 그 통혼은 원나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고려측에서는 주둔군이 귀환할 때 고려 여성을 데리고 가는 것을 혼인문서의 유무로서 판단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여성이 원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원나라로 간 고려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 사회에 융화되어 살았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고려의 고유한 미풍 풍속을 보존하였으며 원나라

궁정으로 들어간 고려 여성들의 사례에서 보듯 군인처들도 고려풍을 유행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나라에서 보통 평범한 고려 여성은 특별히 몽고 이름을 가지지 않고 국명에 따라 막연히 高麗氏라고 불리어졌다. 이들은 몽고족의 守繼婚 풍속을 반대하거나 또는 남편이 죽고 나서 수절하는 등의 행위는 몽고 귀족 간에도 높이 평가를 받아 “高麗氏守節”이 원대사의 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K C I

（中文提要）

## 蒙·元的征服戰爭與高麗女性

裴淑姬

隨着高麗與中國政治、經濟上交往的頻繁，加上這期間在中國北方先后出現的遼、金、蒙元三朝對高麗王國的壓迫和欺凌，以及受到蒙古的侵略的影響，許多高麗人自願或者非自願陸續來到中國，其中不少是女子。在這些高麗女子中，地位最低、最受蹂躪的當是所謂的高麗“貢女”。對於高麗“貢女”，國內外雖然已有少數學者作過研究，但僅僅是作為“貢女”而已，並沒有涉及到一般的高麗女子的狀況。特別是對普通的高麗女子，她們在蒙古入侵的戰爭動亂期間是過着怎樣一種顛沛流離的生活？有關她們入元以后的去向如何？生活狀況怎樣？以后這麼回本國呢？發現這些所謂的高麗“貢女”，大多數被“貢入”蒙古汗國的宮庭或者進入蒙古貴族之門，而且令人意外地事發現以前的研究者沒注意到她們被蒙古汗國政府送往投降蒙元的南宋軍隊里或者在元朝高麗駐軍中作為這些軍人的妻室，後來軍人回國的時候又將她們帶回到了大都。本文不僅要論述高麗女子入元以后痛苦和曲折的歷史，而且還涉及到她們在民族融合和民族文化交流中所作出的貢獻。因此，對於元時期高麗女子與異民族婚姻問題，我們有必要從多角度、多方面來加以分析和考慮。

十三世紀中后期，高麗政府在元政權的壓迫下，連續頒布“禁婚令”、“結婚許可証”等命令，強制要將高麗女子送到元朝都城大都。元對高麗的要求，引起了高麗國內很多人的不滿。蒙古在攻打南宋的過程中，襄陽府是一個很重要的地方。元對南宋的征服戰中最激烈的一場戰爭是在襄陽和樊城展開的。當時呂文煥任襄陽守將，負責指揮這場防禦戰。從1268年到1273年，南宋和元朝展開了長達四五年時間的持久戰。最后以元軍攻占襄樊城、呂文煥投降元朝而結束戰鬥，同時也宣告了南宋最終滅亡的時間已經不遠。當時南宋對戍邊和實戰的士兵所發的餉銀有熟券和生券之分，常規

所發的餉銀稱為熟券，另外加發的餉銀稱為生券，而軍隊也有了熟券軍和生券軍的區別。生券軍士兵比較年輕，訓練比較良好。呂文煥投降元朝以後，元世祖為了優待生券軍，幫助他們娶妻。哪么，為什麼元朝要優待生券軍，幫助他們娶妻呢？原來它的其目的是為了要這支軍隊去侵略日本。蒙古在征服南宋的過程中，為安撫南宋的投降軍(歸附軍)使用的這種手段，即以異民族安撫異民族，從而削弱其反抗意識。當南宋徹底滅亡後，尤其元軍對日本遠征失敗後，駐紮在高麗的元軍與已經嫁給他們的高麗女子一起回到了元朝。大部分從高麗來的女子們隨着本國的國名稱呼為無名的“高麗氏”，按照上揭所說，跟軍人結婚的人數比較多，所以她們的行動也在元社會內受到注目。中國的元朝記載里面特別重視“高麗氏守節”的內容，即是高麗女子對丈夫的貞操。蒙元族有收繼婚的風俗，元平章庫德之側室高麗氏以削髮為尼來抗爭繼子執行收繼婚。這件事表示了蒙古收繼婚風俗與高麗女子從一而終的貞節觀念之間的激烈沖突。有的高麗氏，甚至在其丈夫死於兵後，自己便積薪塞戶以火自焚而死。所以我們有必要重新認識融入蒙古家庭和日常生活中高麗女子所發揮的儒家傳統文化的影響。這些高麗女子在客觀上對促進儒學文化交流，並對元朝社會文化的變遷產生了一定的積極作用。

주제어: 몽고침략, 송원군관, 주둔군, 고려여성, 통혼, 고려풍

關鍵詞: 蒙古侵略, 宋元軍官, 駐屯軍, 高麗女性, 通婚, 高麗風

Keywords: Mogolian Invasion, Sung-Yuan military and government official, stationed troops, Korye women, cross marriage, Korye style.

(원고접수: 2007년 4월 30일, 심사완료: 2007년 6월 9일)